

## 제안 규정령에 대한 제안 변경 사항

드라이클리닝 작업과 관련된 퍼클로로에틸렌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 부유 유독물질 통제 조치에 대한 제안 수정안 및 퍼클로로에틸렌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하여 제안된 요구조건의 채택

주: 다음은 협의회가 2006년 12월 8일에 발표된 '실무진 보고서: 일차 사유서'의 부록 A에 기술된 최초 제안 규제문에 대하여 변경을 승인한 내용입니다. 이 문서는 최초 제안된 규제문에 가해진 변경 사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출력되었습니다. 최초 제안 규제문 전부는 일반 활자체로 되어 있습니다. 제안된 변경 사항은 이중 밑줄의 경우 원안에 추가된 부분을 뜻하고 ~~이중 실선~~은 삭제된 부분을 뜻합니다. 해당 규정 중 협의회가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은 [변경 무]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

1. 캘리포니아제규정집(CCR) 표제 17의 새 조항 제 93109조를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읽는다:

제 93109조. 드라이클리닝 및 발수 처리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클로로에틸렌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 부유 유독물질 통제 조치(Airborne Toxic Control Measure for Emissions of Perchloroethylene from Dry Cleaning and Water-Repelling Operations).

(a)부터 (l)까지 [변경 무]

~~(m) 위반.~~

~~이 조항을 위반하면 주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민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같은 처벌에는 보건의안전법 제 39674조에 의하여 위반이 발생한 개개의 날에 대하여 최대 \$10,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거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.~~

표 1. 기존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퍼크 장비 퇴출 시한 요약  
[변경 무]

주: 인용 근거: [변경 무]

참고 조항: [변경 무]

2. 캘리포니아제규정집 표제 17, 제 93109.1조를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읽는다:

제 93109.1조. 퍼크 제조업자의 요건.

(a)와 (b) [변경 무]

~~(c) 위반.~~

~~이 조항을 위반하면 주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민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같은 처벌에는 보건의안전법 제 42402.4 조에 의하여 \$35,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거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.~~

(d) [변경 무]

주: 인용 근거: [변경 무]

참고 조항: [변경 무]

3. 캘리포니아제규정집 표제 17, 제 93109.2 조를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읽는다:

제 93109.2 조. 퍼크 유통업자의 요건.

(a)부터 (c)까지 [변경 무]

~~(d) 위반.~~

~~이 조항을 위반하면 주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민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같은 처벌에는 보건의안전법 제 42402.4 조에 의하여 \$35,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거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.~~

(e) [변경 무]

표 2. 퍼크 수수료 인보이스 요율  
[변경 무]

주: 인용 근거: [변경 무]

참고 조항: [변경 무]